

제9장 예금의 지급과 해지





예금의 지급

신입직원 교육수료 후 첫 출근을 한 서진여 주임에게 김흥구 고객께서 내점하였습니다.

본인의 저축예금 통장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되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입수처리를 해야 할까요?

▶ 요청사항

- ① 정액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X 3매
- ② 일반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X 1매 ③ 현금 200만원

통장/도장 및
“찾으실 때”
전표 징구



전표에 날인된
도장(서명)
대조확인



지급화면에서
전산처리
(연동거래)



자기앞수표 및
현금 교부

- ▶ 예금 지급 시 유의사항 숙지
- ▶ 현금거래 vs 대체거래

“찾으실 때” 전표작성 예시

찾으실 때 (해지, 이자/신탁이익, 당첨금, 개인용MMF 청구 겸용)

계좌번호	110-103-12345#		
금 일천오백만 원			
위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7년 12월 20일			
성명	김신한 kim(명)		
기록사항 (한글7자 범위내)	수수료포함출금 (가·부)		
신청좌수/주	좌수	좌수출금시만기재 비밀번호는 PIN-Pad기에 직접입력하여 주십시오.	
지정일자	지정회차	회차	

여러건으로 나누어 출금을 원하시는 경우

찾내 실역	기록사항	₩
	기록사항	₩

수표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10만원권	매	100만원권	3 매	금액기타	1 매
₩		₩3,000,000		₩10,000,000	

나는 계좌도 이제아질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본인확인

본인확인

수수료포함출금 ??

서명거래의 경우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거래는 불가함.

* 계좌번호나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주소가 변경된 고객께서는 창구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 기록사항란은 통장에 기록을 남기고자 하실경우 적어주시면 한글 7자 범위내에서 기록하여 드립니다.
찾으실 때 (제무지원부 2009. 1 개정) (2-700-0038) (20.0×13.0 백상지 70g/m²)

壹-일, 贳-이, 參-삼, 四-사, 伍-오

六-육, 七-칠, 八-팔, 九-구, 拾-십

百-백, 千-천, 萬-만, 億-억, 兆-조

[000003] 수신.지급/미자지급 >> 지급 [테스트]

계좌번호	110-205-123456	홍길동1	은행구분	1	신한은행	비밀번호	IC카드	고객조회
[금액정보]			[지급정보]					
거래구분	1	일반 지급	공금지급사유		수표현금화구분		정정후재거래/번호	
합계		15,000,000	적묘코드		BOK 입지사유		40번 화면 링크.	
현금		2,000,000	공금문서종류				고객성명+실명번호 확인 가능	
대체		13,000,000						
거래메모								
[연동거래정보]								
수표권종	매수	시작번호	종료번호	일반권 금액	수수료징수구분	자동산출	통합	
16	100만원	3	12345678	12345680				
19	일반	1	43211234	43211234	10,000,000	일반권 인		
은행코드	연동입금계좌번호	수취인명	연동 입금금액	전달 메모	수수료징수구분	수수료 면제사유	수수료조회	
					0	자동산출		
[수수료/수표정보]								
수수료 징수방법	1	현금	지급금액 중 당행자기앞수표 100만원권 3매, 1천만원 일반권자기앞수표 1매, 현금 2백만원 지급요청 할 경우 입력 예시.					
현금화수수료 징수구분	0	자동산출	현금화수수료면제사유					
창구거래수수료 징수구분	0	자동산출	창구거래수수료면제사유					



예금지급의 기본원칙 - 예금주의 지급요청에 의한 지급요건

가. 통장·증서가 있을 것

단,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름

나. 지급표상의 인감·서명이 신고한 것과 일치할 것

서명에 의한 경우는 신분증에 의해 본인확인 후 지급 (신분증 사본 보관 불필요)

※ 서명에 의한 경우 본인확인방법 해설

본인확인자가 관련 전·장표에 본인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 본인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 본인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다.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일치할 것

비밀번호는 핀패드기를 이용 비밀번호 일치여부를 확인

라. 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좌비밀번호 **5회 오류시** 이용매체에 상관없이 지급거래가 제한됨

예금의 이자계산

- ❖ 이자계산 금액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원미만은 절사
- ❖ 이자계산기간은 예금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를 제외한 기타 타점권은 교환결제일)을 포함하고 지급일을 뺀 한편넣기로 함.



예금지급의 기본원칙 - 지급 · 해지시 유의사항

예거기약
18조①항

- ① 증서, 통장, 수표, 기타 증표의 위·변조 여부
- ② 증서, 수표, 청구서, 기타 증표 등의 인감(서명)과 신고된 인감(서명)과의 일치 여부
- ③ 핀패드기를 이용한 비밀번호 일치여부
- ④ 미결제타점권을 제외한 잔액의 초과 여부
- ⑤ 분실, 도난, 기타 사고신고의 유무
- ⑥ 법적지급제한, 질권설정, 특약사항 여부
- ⑦ 금액을 고친 흔적이 있는지의 여부 및 부기금액이 주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한가의 여부 및 언어, 행동 등
기타 의심스러운 점의 유무

전표는 유일한 지급의 증거물이다.



[참고]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 면책조항

인감
대조

제 18 조 [면책]

-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 확인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밀보장
의무

실명증표
대조의무



예금지급의 기본원칙 - 인감대조 방법

● 인감대조 방법

- 기억에 의한 방법
- 평면대조법
- 겹쳐 보는 방법
- 과학적 기기에 의한 방법(현미경, 확대경, 적외선 감별기)

● 인감(서명)대조의 정도

평면대조법 + 겹쳐 보는 방법

일반인보다는 약간 높으나, 필적감정 전문가 보다는 낮은 정도



● 서명대조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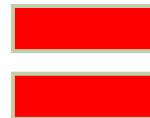
육안으로 외형상 전체적으로 유사여부를 평면대조하면 족함.

서명거래시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증표로 본인확인을 해야 함.



예금지급의 기본원칙 - 인감대조 방법

▶ 인감대조 방법<겹쳐 보는 방법>



법인인감 대조 TIP

인감 크기, 글자체 등으로
구별 가능하지만, 인감 내 특수문자, 숫자
로 쉽게 구별 가능함.



<동일 법인, 다른 인감>



예금지급의 기본원칙 - 정정후 재거래시 유의사항, 복수결재후 지급

정정후 재거래시 유의사항

- 1) 정정후 재거래란 **거래후 취급직원의 오류(현금대체 오류, 금액 오류등)**로 원거래 정정후 지급시 고객으로부터 편패드기에 의하여 **비밀번호를 입력받지 못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정정후 재거래시에는 반드시 오류거래 및 정정거래가 있어야 가능하다.
- 3) 정정후 재거래는 **책임자 복수결재**를 득해야 한다.
- 4) 고객에게 정정후 재거래 사실 통지후 **해당 전표에 통지사실 여부를 기록**한다.

복수결재후 지급

2억원 초과 지급 시(해지포함) 책임자 복수결재로 지급 (당좌예금 교환지급 제외)한다.

(기업점포는 개정전과 동일하게 5억원 초과시 복수결재).

단, 책임자 1인이하인 비독립출장소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해당책임자가 전결처리



예금의 해지

민트정기예금 만기일이 도래한 고객께서 내점하였다.

정기예금의 해지절차에 대해 설명하세요.

실명확인증표로
본인확인



통장, 도장 및
찾으실 때 전표
징구



인감 및 비밀
번호 일치여부
확인



전산처리 및
통장/계산서
교부

- ▶ 해지시 본인확인 절차
- ▶ 만약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통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할까요?



예금의 해지절차

금융실명제 실명확인 유권해석(금융위원회 2002.7)과 동일하게
본인확인자가 전표의 본인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본인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 생략할 수 있음

가. 고객의 해지요청시 **본인 확인** 또는 **본인의 진정한 해지의사를 확인**한 후

증서(통장)와 청구서를 받고 신고된 인감(서명), 비밀번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해지처리.

단, 중도해지시에는 본인확인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

▶ 법인의 대리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위임관계서류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찾으실 때 전표에 첨부

나.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무기명예금은 실명확인 후 해지처리

다. 예금거래를 해지할 때에는 미정리사항, 사고등록, 미결제타점권의 유무를 확인

라. **해지된 통장(증서)은 페이드 및 마그네틱스트라이프를 제거한 후 예금이자계산서와**

함께 해지금액을 예금주에게 교부

⇒ 고객이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 폐기

⇒ **무기명예금은 증서를 대용전표로 사용**

마. 미성년자 예금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에 의해 해지가능

**‘본인확인’ 및
‘본인의 진정한 해지의사’
확인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본인(대표자)확인
 ② 인감 날인된 위임장 또는 영사확인 위임장 등을 통해 본인의 진정한 해지의사 확인
 ->**대리인발급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사 확인절차 수행 후
확인방법(유선 등) 및 확인일시 기재**
 ③ 법인의 대리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서류 및 위임관계서류 확인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절차(1)

(1) 법정대리인의 확인방법 및 서류

- (가) 친권자 확인 - 미성년자 기준 (특정/상세)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일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친권자 지정, 공동친권 지정 등 특수한 경우 친권자 확인 불가하니
가급적 미성년자 기준으로 징구

- (나) 후견인 확인 - 미성년자 기준(특정/상세) 기본증명서
 - (일반등록사항에 후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2) 해지거래 방법

- (가) 원칙 :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예금을 해지 한다.(민법 제909조)

부모가 없고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에 의하나, 중요재산에 대한 처리는
후견감독인이 있을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50조)

- ☞ **확인서류** : 미성년자 기준 발급 '기본증명서(특정/상세)' 과
미성년자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절차(2) <父母 一方>

(나) 예외기준(부모 일방에 의한 해지처리):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자의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920조의2)

※ 고객민원 예방을 위해 5백만원 이하의 예금해지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가급적 예외기준으로 업무처리

- ① 확인서류 : 원칙과 동일(간소화 가능→가족관계 확인서류 중 한 개만 확인 or 행정정보 열람 등)
- ② 전표/장표 작성 방법

부모의 일방이 다른 친권자의 명의를 함께 연서하여 **공동명의**로 전/장표를 작성 및 거래한다.

Ex) 예시 : 일방의 친권자가 다른 친권자 대리 서명가능

홍길동의 부 ○○○ 서명 or (인)

홍길동의 모 ○○○ 서명 or (인)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절차(3) <未成年者 本人>

(다) 예외기준(미성년자 본인에 의한 해지처리)

☞ 미성년자가 본인명의 예금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자 본인에 의해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 ① 만 18세 이상일 것
- ② 해지원금이 1백만원 이하일 것
- ③ 미성년자 본인이 신규한 예금일 것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소득증명서 등
본인이 예금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외적용이 가능

Q1. 1백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조건만 부합하면 무조건 해지 가능 한가요?

A1. 절대 아님!!

본 예외기준은 민법의 원칙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업무기준으로서 당행이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예외기준 적용조건 이외에도 외관상 의심 및 거래 패턴, 현재의 신분 등을 검토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친권자 내점에 의한 해지 안내 또는 유선에 의한 친권자 의사확인을 통해 주의 깊게 업무처리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절차(4)

(3)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거래시 주의사항

- (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반드시 「친권자」에 의해 거래한다.
- (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여부는 미성년자 본인 기준의 '(특정/상세) 기본증명서' 및 미성년자 본인 기준의 '(일반/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 법정대리인 기준 '(일반/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친권자 이름/실명확인번호 미등록 또는 공동친권인 경우 업무처리 오류 가능성 있음

- (다) 부모의 일방에 의한 예금거래의 해지는 예금을 신규한 친권자 여부, 금액의 크기, 개설 정황, 공동친권자 상호간 관계(이혼소송 진행 등),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 한다.
- (라) 미성년자 본인에 의한 예금의 해지 시 의심이 가는 경우 법정대리인 내점에 의한 해지를 안내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 시 주의를 기울인다.

*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or 상세) 징구 시 유의사항

- ①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이혼(재혼)가정의 경우
이혼전 자녀 미표기(현재 혼인관계의 생존한 자녀만 표시)
- ②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가정의 경우
계모 및 계부를 친권자로 혼동할 가능성 有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 기준정리(1)

미성년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은 19세로 성년됨 즉, 만19세 미만 고객은 미성년자임<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거래당일 기준으로 <u>1998년생 생일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u>
<미성년자 나이계산> 생일이 지난 경우(거래당일 포함) : 현재년도 - 출생년도 = 만나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 현재년도 - 출생년도 - 1 = 만나이 <민법 개정> 성년의 시기 : 만20세 > 만19세 ('13.07.01 개정)		
해지 및 제신고 거래자	원칙 (부모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대리인에 의한 거래<ul style="list-style-type: none">- <u>친부모 혼인 중인 경우 : 부모 공동</u>- 지정된 친권자 (공동친권- 모두 동의 하에, 단독친권-지정 친권자에 동의 하에)- 후견인※ 금액기준 없음
	예외 (부모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일방에 의한 거래<ul style="list-style-type: none">- <u>친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 부 또는 모 일방</u>※ 원금5백만원 이하의 예금해지 시 <u>신규한 친권자 여부, 금액의 크기, 개설 정황, 공동친권자 상호간관계(이혼소송 진행 등), 거래 내용 등을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악의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가급적 예외기준으로 처리함</u>※ 가급적 미내점 친권자와 유선통화※ 원금500만원 기준 : 절대적 기준 아님 당행 미성년자 고객(11.06기준 500만원이하 97.2%)를 기준으로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정하진 금액임. 따라서 500만원 초과시에도 거래정황 등 분쟁소지를 고려하여 악의가 없어보이는 경우 유선 등 주의의무를 통해 업무처리 고려할 수 있음.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 기준 정리(2)

해지 및 제신고 거래자	예외의 예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미성년자 본인에 의한 해지</u> (조건부 허용 : ①②③ And)<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만18세 + ②해지원금 1백만원 이하 + ③본인 신규한 예금(창구신규에 한함)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소득증명서 등 본인이 예금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외적용이 가능※ 의심이 가는 경우 법정대리인 내점에 의한 해지를 안내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 시 주의※ 업무 허용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의 해지(제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예금해지 포함)만 가능함- 예금의 제신고(비밀번호변경, 인감변경 등 통장재발급)만 하는 경우 불가
--------------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주의할 점

① 가족관계증명서가 '이혼한 생부가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인 경우

- 생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 생부, 배우자, 자녀가 함께 표시되어, 미성년자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생모인지, 계모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생부와 배우자만 표시되어 이혼/재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

② 가족관계증명서가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인 경우

- 부모(생부, 생모)만 표시되고 이혼/재혼 사실여부 및 친권자 여부는 표시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③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 기준으로 발급됨

- 본인, 배우자, 자녀가 함께 표시되어 미성년자 기준으로 친권자 여부 및 이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



미성년자 예금해지시 고객의 준비서류 (1)

고객의 상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①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 및 ②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를 안내하시면 어느 상황에서도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점	징구서류
원칙	부모 공동 친부모 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대리인 확인서류(택1)①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②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③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내점한 부&모 실명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내점한 부&모 실명확인증표
	단독 친권자 (친권자1인)	[기본증명서 : 친권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내점한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 친권자 '부' 또는 '모'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대리인 확인서류(택1)①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②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점한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예금해지시 고객의 준비서류 (2)

구분	내점	징구서류
원칙	공동 친권자	<p>[기본증명서 : 친권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내점한 친권자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p>[기본증명서 : 친권자 "부모" 또는 "공동친권"으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내점한 친권자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전원' 내점시 징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내점 친권자의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된 위임장 * 미내점 친권자의 실명확인증표은 사본 가능
	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후견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확인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예외	부 또는 모 친부모 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②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내점한 부 또는 모 실명확인증표
예외의 예외	미성년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 조건부 허용 (@⑥© And) : <u>⑥만18세+⑥해지원금1백만원이하+⑥창구에서본인신규한 예금</u>

(예시) 미성년자 예금 해지 전표 작성방법

찾으실 때 (해지, 이자/선택이익, 당첨금, 개인용 MMF 청구 검증)

신한은행 www.shinhan.com

계좌번호	200-010-45678			
금 전액 해지 원				
위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3년 10월 29일				
성명 홍길동				
기록사항 (현금이나 마수출금시판기자 최/주)	수수료포함출금 (가·부)			
신청자수/주	마수출금시판기자 비밀번호는 PIN-Pad기에 직접입력하여 주십시오.			
지정일자	지정회차	회차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홍길동의 부 홍 문 서명 또는 (인) And 홍길동의 모 김춘설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홍길동의 친권자 홍 문 서명 또는 (인) OR 홍길동의 후견인 허 균 서명 또는 (인)				
* 부 또는 모 일방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도 모두 기재				

1

- 1 전표 앞면 여백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모두의 기명날인
- 2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을 확인한 직원이 '본인확인'란 날인
- 3 예금의 해지 전결권 (거래 건당 기준)
 - 중도해지 : 2천 이하 창구 전결, 2천 초과 책임자 전결
 - 만기해지 : 3천 이하 창구 전결, 3천 초과 책임자 전결
 - 복수결재 : 2억 초과 {(대)기업영업부/대기업금융센터 5억 초과}



무통장(무증서) 해지

▶ 무통장 해지란

→ 통장(증서)의 발행 또는 재발행 없이 예·적금 등을 해지하는 업무

가. 무통장(무증서) 해지 사유

- (1) 질권실행, 전부·추심명령, 공탁, 상속처리, 잡수입처리 등을 위해 통장(증서) 없이 해지하는 경우
- (2) 통장(증서) 분실, 인감 분실, 통장·인감을 동시 분실한 사고신고 계좌에 대해 통장 재발행 절차를 생략하고 해지하는 경우
- (3) 인감·서명 없이 개설 또는 통장 없이 개설한 계좌 등에 대해 통장발행 절차를 생략하고 해지하는 경우

나. 업무처리절차

- (1) '예금의 해지' 업무기준과 동일하게 본인확인 실시 (필요시 실명확인증표 보관)
※ 단, 대리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위임관계서류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징구
- (2) 비대면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및 사업주에 의한 일괄 신규 계좌 등 실명 미확인 계좌는 실명확인증표 징구 후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실명확인증표 스캔 또는 사본 필수 보관)
- (3) 무통장해지 시 지급전표 앞면에 '무', 뒷면에 '무통장해지 신청서' 전산인자되며, '무통장해지 신청서'에 신청내용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 ☞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대용

다. 책임자 결재

- (1) 찾으실 때 전표 등 관련서류는 책임자가 확인하고 확인인 날인
※ 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경우 타책임자가 확인 후 결재



무통장(무증서) 해지

주의 의무가 가중된다~~~~!!

1807291506011120059610008 < 980421401E3K4BBEGDNC9HSZP >

[***** 푸른길 해기 신청서(풀장 및 민감분석) *****]

1. 신고 내용 : 풍랑분실 민감분실 충격 및 민감분실 비밀번호 변경

2. 민감 신고 :

3. 해당 계좌는 상기와 같이 예신고/체연결 요청 하였어, 엔트리 풍랑방법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예금주 성명 : _____ (인) 또는 서명

[참고] 자동화기기 이용한도

구 분		1회한도	1일한도	비 고
출금	카드 통장	현금100만원 이내 수표 50매	600만원 (M: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행카드 1회 최대 100만원 (수표출금불가) ▶ 1회 한도는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회 현금출금한도는 매수기준 아닌 금액기준임(5만원권포함)
	무매체	100만원(수표 10매)		
입금	카드 통장 모바일	현금150매 이내 (수표 10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기기 입금 1회 한도 폐지 단, 1회 입금시 매수는 현금 150매 / 수표 10매로 제한됨
송금	무매체	100만원 (송금의뢰인 기준 각각의 수취인에게 100만원씩 송금 가능)		당행계좌에 한함(수표입금 불가)
계좌이체	카드 통장 모바일	600만원	3,000만원 (M:5,000만원)	타행카드는 해당 은행 이용한도 적용
	무매체	600만원	1,000만원	-

- ☞ 통장출금 및 무매체출금/이체는 영업점으로 이용신청 후 이용가능
- ☞ 점외 무인코너의 설치장소에 따라 타행수표의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공과금수납(무인공과금납부 및 CD/ATM전자납부포함)은 이체한도 포함안됨
- ☞ 대출 원금상환업무는 1회/1일 이체한도 포함됨

[참고] 서류 확인시 주의할 것!!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10				
국적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婚姻
한국	장 [redacted]	1982년 10월 27일	[redacted]	남	既婚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婚姻
부	장 [redacted]	1928년 05월 12일			
모	한 [redacted]	1922년 02월 05일			
자녀	성 [redacted]	1992년 12월 30일			
세녀	장 [redacted]	1999년 01월 20일			
이 서류란에 등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부지 기록사항					
2013년 06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한 부모 일방이 본인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
출한 경우 이혼한 내용과 친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미성년자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에
친권표시 여부 및 친권표시의
부/모 누구로 되어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수정증자기명장이 표기 아니면
증명은 그 채리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2013.06.14
6710021

3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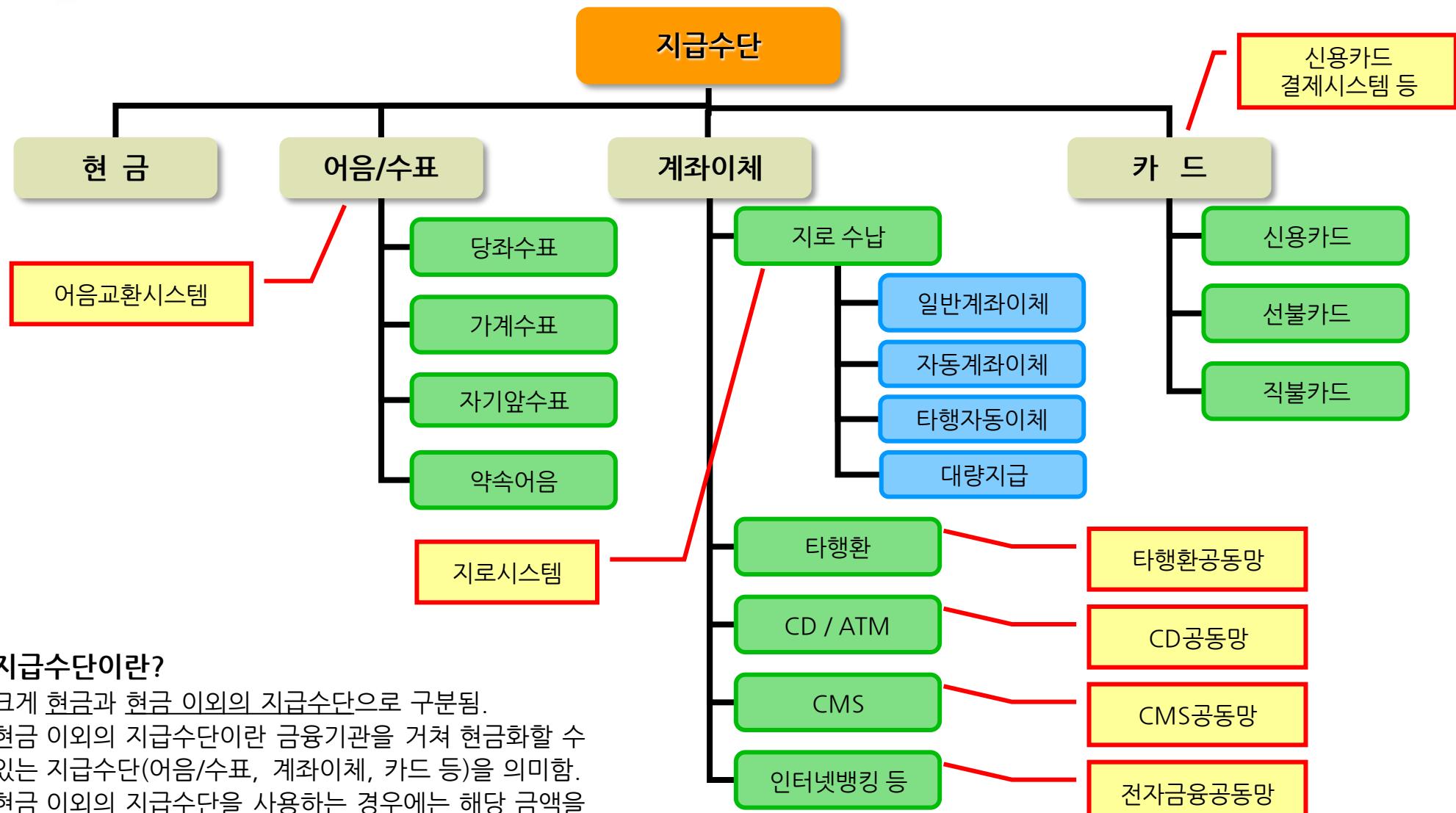
기본증명서

등록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10				
주 분	상세내용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부자생일】 2008년 03월 01일 【부모성】 가족관계증명서부자생일 부부 세조조부자				
자녀	【도로명주소부자생일】 2011년 12월 12일 【생명전】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10 【생명후】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22 【생명자료】 도로명주소별 세20호				
기본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인	장 [redacted]	1999년 01월 20일	90 [redacted]	남
일반등록사항					
주 분	상세내용				
부모	【출생장소】 성남시 분당구 아달동 301번지 【신고일】 1999년 02월 18일 【인구번호】 9 【출부일】 1999년 02월 20일 【출부자】 성남시 분당구청장 【부모의 세대원 중 이중부마 증원한자부자생조생성별일】 2013년 01월 10일 【조생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생자부】 장 [redacted] 【민원자부주민등록번호】 621037- 【민원자부주민등록번호】 670305- 【속부일】 2013년 01월 25일 【속부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비교관서】 대전광역시 동구				
자녀					

2013.06.14
6710021

3 / 3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



지급수단이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됨.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어음/수표, 계좌이체, 카드 등)을 의미함.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절차를 거쳐야 함.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

어음교환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어음교환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중 타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타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

계좌이체

지급인과 수취인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계좌이체는 현금이나 수표의 지급에 비해 도난위험이 없고 금융기관간 결제망을 통해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격지간 지급시 매우 유용함. 계좌이체의 방법에는 지로, 타행환, CD/ATM에 의한 계좌이체, CMS(자금관리서비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이 있음

지로 수납

은행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현금 또는 예금을 수취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전화요금 및 물품판매대금 등 대량의 수납거래와 급여, 연금 등 대량의 지급거래에 편리한 지급수단임. 자금이체 방식에 따라 일반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타행이체, 대량지급 및 인터넷지로, 지방세수납이체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음

일반계좌이체

지급인이 입금시킨 현금 또는 지급인의 예금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자동계좌이체

납부자, 수납기관 및 금융기관간의 **사전약정**에 의거 납부자의 개별적인 이체의뢰 없이 수납기관의 청구내역에 따라 해당금액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수납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것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

타행이체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은행의 예금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것

대량지급

급여, 연금 등과 같이 1인의 지급인이 다수의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인의 예금잔액 또는 입금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인의 지급명세에 따라 각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경우를 말함

타행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은행점포에서나 영업시간 중 건당 5억원 한도내에서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계좌이체 수단

- ✓ 타행환업무 운용시간: 오전 7시 ~ 오후 6시
- ✓ 1회 송금 가능한 한도: 5억원

CD / ATM

고객이 거래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 : Cash Dispenser)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을 이용하여 거래은행의 본인계좌로부터 거래은행내 또는 다른 은행의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

CMS

- 은행, 금융투자회사, 금융결제원이 공동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 입금이체서비스는 물품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각기 상이한 은행에 계좌를 가진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 출금이체서비스는 각종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이용대금, 회비 등 납부인이 지정되어 있는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함

<참고>

기업CMS란?

은행계좌의 잔액조회 및 입출금 등에 대한 정보처리를 통신라인과 컴퓨터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기업고객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가상계좌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

신용카드

신용카드업자가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용역을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지급수단
카드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전문회사카드, 판매점카드)로 구분됨

선불카드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일정금액이 저장되어 있는 카드를
카드발행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

직불카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카드